

## 이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 주요 법적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④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협의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를 포함하며,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및 공보처

2. 조달청, 경찰청, 산림청, 수산청, 철도청, 해운항만청, 기상청 및 문화재 관리국

제9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 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앙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 부시장이, 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掌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내무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교통부 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임무를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④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재해복구계획의 확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해복구 계획은 지체없이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4조(중앙합동감사) ① 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